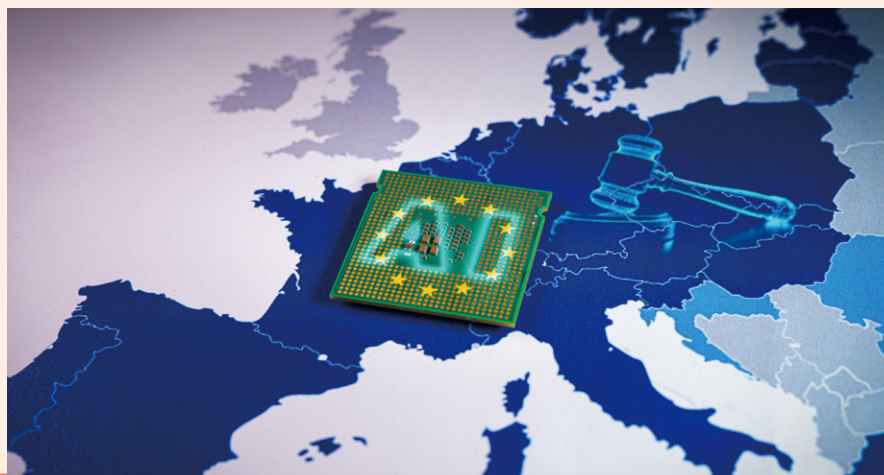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이 언론 산업에 주는 도전과 기회

심소연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EU법)·법학박사



I. 들어가며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이제 언론 산업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자동화된 뉴스 작성, 독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가짜 뉴스 탐지 등 AI의 활용 범위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언론사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AI 기술의 빠른 확산은 새로운 도전과 윤리적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진실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독자들의 프라이버시(privacy)와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AI 기술을 사용하는 언론사들이 직면할 기회와 도전, 그리고 향후 전략적 대응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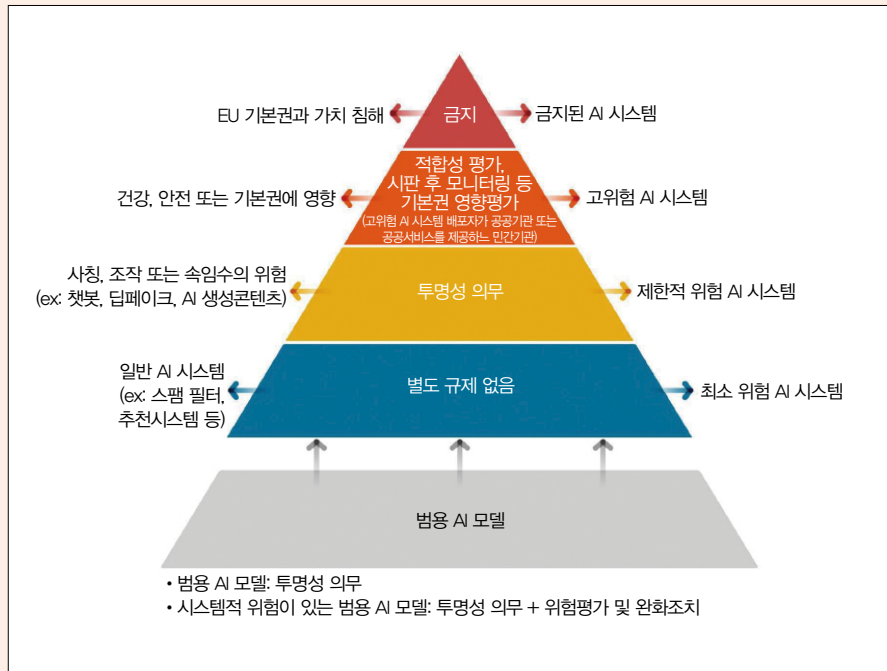
2024년 8월 1일 공식 발효되어 단계적 시행(가장 빠른 경우 발효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가장 늦는 경우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뒤부터)을 앞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은 AI 기술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한 인간의 기본권 보호와 신뢰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기술이 언론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현시점에서 이 법은 언론 산업의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법은 유럽연합 역내에만 적용되기에 국내 언론 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인 만큼 앞으로 국내 관련 입법에 큰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이 법에 대한 기본적 소개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할지, 그리고 언론사들이 이 법이 가져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의 입법 경과 및 주요 내용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22일 인공지능법의 초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시 2022년 11월 말에 출시된 <오픈AI>(Open AI)의 챗GPT(ChatGPT)라는 생성형 AI의 등장 이전 시기였기에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초안에는 생성형 AI를 포함한 범용 AI 모델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후 이를 추가한 수정안에 대해 유럽의회, EU 이사회 그리고 EU 집행위원회 간 3자 협의 끝에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180개의 전문(Recital), 총 13장(Chapter) 113개 조항 및 13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 올해 6월 13일에 제정되었고, EU 관보에 게재된 7월 12일로부터 20일 후인 2024년 8월 1일에 발효되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UN) 사무총장은 인공지능의 제한 없는 급속한 개발은 핵전쟁에 버금가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 인공지능 감시기구 설립을 추진하자는 일부 인공지능 업계 리더들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2023년 6월에 밝힌 바 있다. 이렇듯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AI에 대해 구속력 있는 규제 방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가장 큰 특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금지된 AI 시스템’, ‘고위험 AI 시스템’,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 ‘최소 위험 AI 시스템’의 4가지로 분류하고 차등적으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그림 1〉 위험도에 따른 AI 시스템의 분류 및 차등적 규제



출처: 유럽의회조사처(EPR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의 자료를 재구성. 심소연 (2024. 4. 16).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04호(통권 제242호). 국회도서관

‘금지된 AI 시스템’의 유형은 〈표 1〉과 같이 8가지로 분류되며 ‘금지된 AI 시스템’ 관련 조항들은 이 법의 발효 이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2월 초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는 업체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00억 원)와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7% 중 더 큰 금액으로 과징금을 내야 한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상 ‘고위험 AI 시스템’은 인간의 건강, 안전, 기본권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중대하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AI 시스템으로서, 그 유형은 크게 부속서 I과 부속서 III에 속한 두 가지로 나뉜다. 부속서 I에 해당하는 ‘고위험 AI 시스템’은 다시 A절(특정 제품의 안전 구성요소로 이용되거나 특정 제품 그 자체인 경우로, 예를 들어 기계류, 장난감, 승강기, 의료기기 무선설비 등에 사용된 AI 시스템)과 B절(민간항공, 차량, 해양장비, 철도 시스템, 무인항공기와 그 부품 장비 등 주로 운송 수단과 관련된 AI 시스템)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부속서 III에 해당하는 ‘고위험 AI 시스템’은 다음의 8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된다.

- ① 생체인식 관련
- ② 중요 인프라 관련
- ③ 교육 및 직업 훈련 관련
- ④ 채용, 근로자의 관리 및 자영업자의 접근 관련
- ⑤ 필수 민간·공공서비스와 그 혜택에 대한 접근과 향유 관련
- ⑥ 관련 EU법 또는 EU회원국법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법의 집행 관련
- ⑦ 관련 EU법 또는 EU회원국법에 따라 이용이 허용되는 이민, 망명 및 국경관리 관련
- ⑧ 사법 행정 및 민주 절차 관련

〈표 1〉 금지된 AI 시스템의 유형

잠재의식/ 조작·기만적 기법	인간의 잠재의식을 이용하거나 이를 조작·기만하는 기술로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켜 원치 않는 결정을 야기하는 AI 시스템
개인/집단의 취약점 이용	연령, 장애, 사회·경제적 상황 등 취약점을 악용하여 개인/집단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도록 인간의 행동을 왜곡하는 목적 및 효과를 가진 AI 시스템
사회적 평점 (Social scoring)	개인의 특성, 성격, 사회적 행동에 기반하여 해당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평가점수를 산정하는 AI 시스템
범죄 예측	개인의 특성, 성향 등 프로파일링에 전적으로 의존한 범죄 발생 가능성 예측 AI 시스템
감정 추론	직장/교육기관에서 인간의 감정을 추론하기 위해 이용되는 AI 시스템
생체인식 분류	생체정보의 유형 분류를 통해 인종,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범주를 분류하는 AI 시스템
안면 인식 DB	인터넷 또는 CCTV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안면 정보를 수집하여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확장하는 데 이용되는 AI 시스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법 집행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AI 시스템

출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제5조의 내용을 재구성

‘고위험 AI 시스템’은 시스템의 제공자(provider)인지 배포자(deployer)인지에 따라 의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를 포괄하자면 품질관리체계 구축 의무, 기술문서 작성 의무, 로그 보관 의무, 적합성 평가·선언 의무, CE(Conformity European)마크 부착 의무, 기본권 영향평가 의무 등이다.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각 행위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행위자가 제공자인지, 배포자인지 또는 수입·유통업자인지 관계없이 최대 1,500만 유로(약 215억 원) 또는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고위험 AI 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발효 후 2년 후인 2026년 8월 초부터 적용된다.

III. 언론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언론 산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AI 시스템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상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예: 챗봇(ChatBot), 딥페이크(deepfake), AI 생성콘텐츠)과 ‘최소 위험 AI 시스템’(예: 스팸 필터, AI 기반 비디오 게임, 추천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소 위험 AI 시스템’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 없이 자율적인 행동강령이나 업무 준칙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준수를 권고 받는 수준이다. 한편,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의 제공자는 이 법의 제50조가 규정하는 투명성 의무(AI 시스템을 이용했음을 알릴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워터마크, 라벨링 등)의 대상이 된다.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로서 언론사가 이용자의 행동, 선호도, 구독 이력 등을 기반으로 특정 기사에 대한 이용자의 무료 접근을 허용하거나, 이용자에게 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는 ‘역동적 지불장벽(dynamic paywall)’ 방식으로 유료 과금 체제를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가 AI와 상호작용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도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상 투명성의 의무에 해당한다. 이렇듯 이 법은 투명성의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AI 시스템의 편향성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사가 제한적 AI 시스템을 활용 중인 몇 가지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경우 챗GPT 3.5를 기반으로 자사 기사 5만 건 이상을 학습시켜 만든 ‘AI 어시스턴트’를 2023년 12월 21일부터 온라인 뉴스에 한정하여 활용해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만든 AI 시스



템을 활용하여 독자 맞춤형 뉴스를 제공 중인데, 기사 하단에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기사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제한적 AI 시스템의 제공자가 투명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위험 AI 시스템'의 제공자와 배포자의 의무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대 1,500만 유로(약 215억 원) 또는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제한적 AI 시스템'의 제공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의무를 지는 배포자가 투명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750만 유로(약 110억 원) 또는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제한적 AI 시스템' 관련 규정은 이 법의 발효 1년 후인 내년 8월 초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언론사가 '제한적 AI 시스템'의 제공자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배포자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과징금 액수의 차이가 크다. AI 시스템을 단순히 이용하여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생성, 또는 독자 분석을 하는 언론사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상 '제한적 AI 시스템'의 배포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법은 기존 AI 시스템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업체 역시 제공자로 간주하는데, 이 개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 입법자들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을 입법에 참고할 경우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구글>(Google)이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빅테크(big tech) 기업은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2023년에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챗GPT 4.0 개발을 위해 자사와 동의 없이 기사를 학습시키며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오픈AI>를 고소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뉴욕타임스>가 승소할 경우, <오픈AI>는 <뉴욕타임스>뿐만 아니라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동의 없이 사용한 자료의 저작권자인 전 세계 다른 언론사에도 모두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오픈AI>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사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공정 이용'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몇몇 판례가 AI 학습을 위해 인터넷상에 공개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 <뉴욕타임스>가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일례로 2023년에 있었던 Kadrey v. Meta Platforms 사건(No. 23-cv-03417, Doc. 56)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한 법원은 원고의 책이 피고인 메타의 거대 언어 모델(LLM)을 학습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LLM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2차적 저작물(원작물을 수정, 번역, 각색, 파생물 등으로 변형하여 만드는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게다가 <오픈AI>는 저작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자, 2023년에 <폴리티코>(Politico), <비즈니스 인사이드>(Business Inside) 등의 매체를 보유한 다국적 미디어 그룹 <악셀 슈프링어>(Axel Springer) 및 <AP> 통신과 뉴스 사용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해오고 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 세기의 소송은 그 자체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을 던져 준다. 이는 AI 시대에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한 언론사 등 콘텐츠 기업이 AI 빅테크 기업과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으로, 언론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값어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듯 언론사 기사 콘텐츠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는 것이 공정 이용인가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논쟁이 있으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AI 모델 학습에 언론사의 콘텐츠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점은 언론 산업의 저작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법 제53조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훈련 데이터로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 「EU 저작권 지침」(Directive (EU) 2019/790)에 따라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제53조제1항(d)에 따르면,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해당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산하 유럽 인공지능사무국(AI Office)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공개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은 범용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구글>이나 <오픈AI> 등의 빅테크가 자사의 뉴스 콘텐츠를 훈련 데이터로 사용할 때 적절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이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 AI와 미디어 산업 간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V. 언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한편 이 법이 언론 산업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언론사의 규제 부담과 비용이 증가하는 것과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혁신이 저해되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1. 규제 부담과 비용 증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은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EU 역내에 소재지를 둔 언론사에 상당한 규제 부담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언론사가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이 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때때로 기술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자원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론사들은 AI 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외부 자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인건비와 컨설팅 비용 등 언론사의 전반적인 운영비용을 높인다. 특히 중소 언론사의 경우 이러한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법이 AI 시스템의 검증 절차와 보고에 관해 요구하는 사항들도 언론사에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이 법이 가져올 수 있는 규제 부담은 언론사들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비용 증가로 인해 언론사의 재정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 위축과 유럽 언론사들의 경쟁력 약화

그간 AI 기술은 뉴스 자동 생성, 데이터 분석,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언론사가 주로 사용하는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 기술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자세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언론사들이 새로운 AI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과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는 언론사가 새로운 AI 기술을 채택하거나 혁신적인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 주저하게 만드는 등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언론사의 혁신이 저해됨으로써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에 비해 유럽 언론사들이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물론 이 법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유럽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잠재적 사례나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예상해볼 수 있다.

- **AI 기반 편집 및 자동화 콘텐츠 검열:** 언론사가 AI 시스템을 사용해 자동으로 콘텐츠를 편집하거나 검열할 경우, 이 법이 이를 엄격히 통제하여 언론사가 콘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편집 권한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 **데이터 수집 제한:** 언론사가 '고위험 AI 시스템'에 해당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 법이 규정하는 엄격한 데이터 관리 규제는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엄격한 동의 요건이 필요하게 되어 언론 보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 **AI 윤리 기준과 편집 권한:** 이 법이 규정하는 윤리적 기준이 언론사의 편집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적 주제에 대해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특정 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사용하는 언론사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V. 나가며: AI가 가속화하는 탈진실의 시대, 언론의 새로운 역할

발전된 AI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기사들을 통해 사실과 진실의 경계가 흐려지고 정보의 왜곡이 빈번해지는 탈진실(Post-Truth)의 시대에, 언론의 책임은 더 커지고 있으며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로서 언론의 역할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이러한 언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AI가 생성하는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출처 표시 의무는 독자들이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투명성, 신뢰성,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언론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 법이 유럽 언론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법을 통한 규제로 인해 유럽 언론사의 혁신 속도가 느려지거나, 유럽 언론사가 활용하려는 AI 기술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내 입법자들이 이 법을 벤치마킹하는 경우, 국내 언론사들이 규제를 준수하는 동시에 혁신을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며, 결국 언론이 디지털 시대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신뢰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

참고 문헌

- 고찬수 (2024). 뉴욕타임스 vs 오픈AI 소송의 의미. <tech42>. URL: <https://www.tech42.co.kr/뉴욕타임스-vs-오픈ai-소송의-의미/>
- 금준경·박서연 (2024). <챗GPT의 두 얼굴>,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김고은 (2024). 유럽 AI법 '저작권 지침', 콘텐츠 활용 대가 요구 쉬워졌다. <한국기자협회보>. URL: http://m.journalist.or.kr/m_article.html?no=55534
- 김윤명 (2023). <생성형 AI의 법과 윤리에 대한 문답>, 서울: 박영사
- 박서연 (2024). 조선일보 '기사 5만건 학습' 생성AI 도입...기자들 반응은. <미디어오늘>. URL: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199>
- 박영흠·오세욱 (2024). EU AI법(AI act)의 주요 내용과 미디어 업계 영향, 시사점. <Media 정책 리포트>,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심소연 (2024).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최신외국입법정보>, 서울: 국회도서관. URL: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44995>
- 유한주 (2024). AI 저작권 논란에...오픈AI, CNN 등과 콘텐츠 사용 계약 추진.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1160300009>
- 유럽연합 인공지능사무국(AI Office) 홈페이지. URL: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ai-office>
- Deck, A. (2024). For the first time, two Pulitzer winners disclosed using AI in their reporting. <Niemanlab>. URL: <https://www.niemanlab.org/2024/05/tor-the-first-time-two-pulitzer-winners-disclosed-using-ai-in-their-reporting/>
- Lanquist, D. E., Ray, D. J. (2024).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 The NYT v. OpenAI – Fair Use Implications of Generative AI. <Baker Donelson>. URL: <https://www.bakerdonelson.com/artificial-intelligence-and-copyright-law-the-nyt-v-openai-fair-use-implications-of-generative-ai>
- Nichols, M. (2023). UN chief backs idea of global AI watchdog like nuclear agency. <Reuters>. URL: <https://www.reuters.com/technology/un-chief-backs-idea-global-ai-watchdog-like-nuclear-agency-2023-06-12/>